##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하고,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4(규제 개선의 요청 등)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④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통보 양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조의4(규제 개선의 요청 등) ① 법
	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
	을 요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
	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개선
	요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
	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
	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
	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
	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
	인정되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
	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
	<u>다.</u>
	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 정비
	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0
	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
	요청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
	는 양식에 따라 즉시 통보하여야 한
	<u>다.</u>
	<u>④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통보</u>
	양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
	<u>다.</u>
<u>제3조의4</u> (생 략)	제3조의5 (현행 제3조의4와 같음)